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및 유의사항 안내

2020.03.23.(월) /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(KORRA)

관 련 근 거

○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내지 제10항,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제9조
○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(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-8호, 2014.2.26.)
○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 지급 약정서(포괄)
○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(2015.6,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협의체)

□ 대학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및 유의사항 안내

○ **(적용대상)**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(이하 '**대학***') **교육과정**에서 이루어지는 **대학 교원의 재학생**(휴학생 제외)**을 대상으로 하는 대면수업·원격수업**에 제공할 목적

* 협회와 포괄방식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지급 약정을 체결한 대학에 한정

- 대학에서 **교육을 담당하는 교원**(전임교원, 겸임교원, 초빙교원, 시간강사 등)과 **수업을 받는 재학생**(휴학생 제외) **간 수업**에 한정 적용

○ **(이용방법)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수업을 목적으로 이용(복제, 배포, 공연, 전시 또는 공중송신)** (부득이한 경우 전부 이용*)

* 짧은 시(詩)나 시가(詩歌), 짧은 음악 가사, 짧은 영상, 그림이나 사진 등

- 공표된 국내 저작물 및 외국 저작물(법 제3조) 이용 가능
- 번역, 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 가능(법 제36조 제1항)

○ **(이용조건)** 저작물 **이용내역 제출**, 보상금 기준 고시에 따른 **보상금 지급**, **출처의 명시**, 저작물 전송 시 **기술적보호조치** 등

- (**이용내역 제출**) 매년 협회가 실시하는 실태조사 대상 선정시 협조
- (**보상금 지급**) 포괄방식 약정에 따라 대학에서 매년 지급 중
- (**출처의 명시**) 저작자 성명 또는 이명, 출처를 반드시 명시

- (**기술적보호조치) 원격수업** 등 저작물을 전송하는 경우 조치
  · (접근제한조치) 온라인 강의 시스템(LMS) 로그인 재학생으로 제한
  · (복제방지조치) 원격수업 수강 재학생 외에 복제할 수 없도록 조치
  · (경고문구표시) 저작권 보호를 위한 원격수업 강의영상 및 온라인 강의 시스템(LMS) 내 경고문구 표시

○ **(허용범위)** '일부분 이용' 및 '필요한 최소한의 범위'

저작물 구분	일부분 이용 및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	비고
어문 저작물 (논문, 소설, 수필, 시 등)	전체의 10%	
음악 저작물	전체의 20%(최대 5분 이내)	
영상 저작물	전체의 20%(15분)	
이미지 저작물 (사진, 미술 등)	전부 이용 가능	

○ **(적용제외)** 저작권자의 사전 개별 이용허락이 필요 한 경우
- 허용범위 초과, 저작물의 종류·용도, 복제의 부수·태양 등을 고려하여 볼 때,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이용

저작물의 종류·용도	복제의 부수·태양
본래의 수업목적을 넘은 이용이 행해지는 경우	원칙적으로 부수는 일반적으로 한 교실의 인원과 담당하는 교원의 합을 한도로 하나 이를 넘는 경우
· 전체 도서를 요약하여 교안이나 PT강의자료를 제작하여 복제, 배포하는 이용 · '교과과정 이외의 학습' 또는 '일반인 대상 특별강좌' 등에서의 저작물 이용 · '입학 전 예비강좌(pre-school)'에서의 저작물 이용 · 일반인과 졸업생 등에게 공개되는 KOCW, 방통대 및 원격대학의 공개강좌, 졸업생의 반복시청과 '학교 및 교육기관'의 고시특강 등 · 대학 교육계획에 근거하지 않는 자주적 활동(동아리 활동이나 연구회 활동) · 수업시간에 사용되는 작품집(anthologies) 또는 편집음반(compilation)을 제작할 목적으로 악보 또는 음반 등을 복제하는 경우 · 동시중계방송 되거나 전송되는 영상저작물을 원 저작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· 필요한 기간을 넘어 교실 내 또는 학교 내의 벽면 등에 미술저작물을 게시하는 행위 · 방송프로그램 등을 보관실에 보존할 목적으로 녹음 내지 녹화하는 것	· **많은 부수의 복제 등, 다수의 학습자에 의한 사용**(학생 1인당 1부를 초과하여 복제하는 경우 또는 전교생 전부에게 복제물을 배포하는 경우) · **복제의 태양이 시판의 상품과 경합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행해지는 경우**(복제하여 제본하는 등 시판되는 책과 동일하게 만들거나, 미술, 사진 등의 저작물을 감상용이 될 정도의 화질로 인쇄하거나, 연주를 위하여 악보를 복제하는 경우) · **계속적으로 복제가 행해지는 경우**(수업마다 동일한 신문·잡지 등의 칼럼이나 연재기사를 계속적으로 복제)